

[별표] (개정 2011.9.15)

수 수 료 액 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진단서 및 제증명	가. 일반진단서	1통	5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으로 하며 간접검사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별도검사와 수료는 민원인 부담으로 하며 제5호 가목 금액란의 수수료액
	나.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다.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라.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마.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2006-12-28)	1통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으로 하며 간접검사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별도검사와 수료는 민원인 부담으로 하며 제5호 가목 금액란의 수수료액	
	바.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사.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1통	500원	
	아. 결핵증명서	1통	300원	
	자.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차.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카. 1통 초과 발급	1통	100원		
타. 방사선필름사본발급 (신설 94-9-13)	1장 (14×14)	3,000원		
2.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	삭제 (95-1-1)			
3. 항결핵제 보급 (개정95-3-11)	초치료 처방 재치료 처방	1인1개월 1인1개월	2,000원 2,000원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4. 유료접종	가. 삭제 (2011·9·15) 나. 삭제 (20014·18) 다. 간염 라. 장티푸스 (개정91·11·6) 마. 유행성출혈 (신설 91·11·6) 바. 인플루엔자 (신설 91·11·6, 개정 97·8·7)	 1.0ml 1인분 0.5ml 1인분 1인분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u>최근 구입가격</u> 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4)	
5. 검사(신설 89·7·22)	가. 간염검사 나. 수질검사 다. 동맥경화 검사 (신설 2009·11·19)	1회 1회 1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서 정한 보건소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 (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 (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라. 골밀도 검사 (신설 2009.11.19)	1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 (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	1부위추가 촬영시 3,000원추가
	마. 체성분 검사 및 체력측정 검사 (신설 2009.11.19)	1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 (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	
	바. 건강검진 (신설 2009.11.19)	1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 (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	
6. 치과진료	열구전색진료비	1회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과 동일하게 하고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1.4.18)	